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구매목표 포함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76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구매목표 포함	2

I. 제안경위

2025년 4월 21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년 구매목표를 의무 설정하여 구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하나,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어,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구매목표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2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생략)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 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u>위하여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u> <u>목표가 포함된</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¹⁾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²⁾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제3항).

2025년 4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2024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2025년 구매계획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24년 기준)은 2조 3,311억원으로 총 구매액 대비

-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³⁾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3.08% 수준임.

[표]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4년 실적			2025년 계획		
	총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구매율 (B/A)	총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구매율 (B/A)
국가기관	18,038,572	173,985	0.96	20,273,800	181,914	0.90
자치단체	15,580,746	852,712	5.47	14,660,067	860,330	5.87
교육청	10,373,961	393,882	3.80	8,902,947	359,750	4.04
공기업	15,083,910	468,755	3.11	15,013,402	481,053	3.20
준정부기관	5,824,474	206,547	3.55	5,793,289	230,676	3.98
기타공공기관	7,195,779	133,505	1.86	7,171,196	155,244	2.16
지방공기업	3,074,498	92,667	3.01	3,402,114	81,435	2.39
지방의료원	280,506	7,692	2.74	319,195	7,909	2.48
특별법인	267,191	1,440	0.54	278,195	1,155	0.42
합계	75,719,637	2,331,185	3.08	75,814,205	2,359,466	3.11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음.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의 경우 관련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 제출 시 일정 비율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구매목표 제시 의무 관련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 실질적인 공공구매 촉진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경우 의무구매제도 간 중복·난립이 될 수 있거나 의무구매 요건이 충족되는 특정기업에 구

매가 집중되어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할 수 있으므로 논의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보호의 필요성과 기업 간 경쟁제한에 따른 시장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 의무구매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계 기관	제시 의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유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공공조달 시장에서 소상공인 등 일반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심층적인 논의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의 구매금액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우, 해당 분야(품목, 서비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는 공정한 경쟁기회를 잃게 되는 등 시장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목표제도 도입에 일반사업자의 사업활동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신중검토 필요

문 의 처

02)6788-5539

참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현황

	중소기업 제품(총 구매액의 50%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사회적기 업 제 품
	중소 기업	기술 개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5, §13, 시행령 §4, §12)		여성기업 지원에 관 한법률 (§9 및 시행령 §7)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법 (§9의2, 시행령 §7의2)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7, 시행령§10)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22의3, 시행령 §21의5)	사회적 기업 육성법 (§12의2)
구매 비율	총 구매액의 50% 이상	중소 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중소기업 물품·용역 구매액의 각 5% 이상, 중소기업공 사구매총액 의 3% 이상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 이상	총구매액 (공사 제외)의 1% 이상	총구매액(공 사 제외)의 1% 범위에서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0.8%)	법정비율 없음
구매 계획 및 구매 실적	1월말까지 중기부장관에게 통보, 중기부장관이 4월말까지 공고				1월말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 복지부 장관이 4월말까지 공고	2월말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 고용부 장관이 4월말까지 공고	2월말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 고용부 장관이 4월말까지 공고
공공 기관 범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협·수협·산림조합·중기협 중앙회, 한국은행, 지방공기업, 대한상의, 중기협)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2호, §5, 시행령 §2, §3)				좌동	좌동	좌동